# 소 장

원 고 참여연대

피 고 서울종로경찰서장

2013. 6. 25.

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

서울행정법원 귀중

# 소 장

원 고 참여연대

대표자 정현백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

피 고 서울종로경찰서장

## 청구취지

- 1. 피고가 2013. 6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합니다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### 1. 피고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의 경위

원고는 2013. 6. 21. 피고에 대하여 <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>(이하 "이 사건 집회"라 합니다)라는 이름으로 2013. 6. 24.부터 동년 7.21.까지 매일 18:00 부터 21:00에 걸쳐 동아일보사 앞 인도(이하 "이 사건 집회장소"라고만 합니다)에서 약 300명이 모여 집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.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집회장소는 비록 인도이지만 1)집시법이 정한 주요도로에는 인도 역시 포함되고, 2)이 사건 집회장소에 접해 있는 청계로는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및 종로로와 인접한 도로이자 3)종로로->광화문우체국 우회->청계로 동아일보사 정문 앞->세종대로 동아일보 서측 광장 앞->광화문 방향으로 연결된 P턴 도로로서 이 도로 상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세종대로 및 종로로의 교통소통에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, 4)위 P턴 도로위에는 광화문역을 포함하고 있어 1일 평균 10만명이 이동하는 이 사건집회가 열릴 경우 매우 혼잡할 우려가 있어(집시법 제12조 제1항), 제8조제1항에 따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(이하 "이 사건 처분"이라고만 합니다)을 하였습니다(갑제1호증).

#### 2.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

### 가. 교통소통에의 불편의 불발생

이 사건 집회장소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. 아래 그림을 보면 이 사건 집회장소가 매우 넓어 300명 정도의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넓은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.

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면서도 밝혔지만 전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으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할 것이기에 이 사건 집회장소에 인접한 청계로나 세종로, 종로로로 진출할 이유가 없습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일반인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지나는 일이나 이 사건 집회와 인접한 청계로, 세종로, 종로로의 차량소통에 방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.



#### 나. 법리판단의 오류

설사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약간의 교통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집회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

법원은 "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 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· 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 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(위 헌법재판소 1994. 4. 28.자 91 헌바14 결정 참조).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,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계 획하고 있는 시위가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,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 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,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.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"(서울고법 1998. 12. 29. 선고 98누11290 판결:확정).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에 대한 우려로 어떤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위참가인원 등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여 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방해의 우려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고 할 것입니다.

이 사건의 경우에,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위참가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고려나 조치 없이 바로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전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. 특히, 이사건 집회장소의 경우 인도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에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도 현실적으로 매우 작을 것이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.

### 3. 결론

피고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건부과 등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없 이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 니다.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

첨 부 서 류

1. 등록증 1부

1. 송달료 납부서 1부.

1. 신청서 부본 1부.

2013. 6. 25.

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

서울행정법원 귀 중